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권 136p 4. 예비허가(법 제7조)	개념,공식-설명	(2) 2개월 내 심사 및 통지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(예비허가는 1개월)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(2) 2개월 내 심사 및 통지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(예비허가를 받은 본허가는 1개월)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